

분야	인사·서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외부강의 지연 신고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외부강의)
지적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등을 통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0000사무소 직원 000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실시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소속 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신고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회계 · 계약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관서운영경비 예산과목 오집행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지적 내용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과목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출업무 담당공무원은 예산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지침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00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관서운영경비 지급 건을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예산과목 오집행 내역> <table><tr><th>연번</th><th>건명</th><th>집행일자</th><th>집행액</th><th>집행 과목</th><th>정당 과목</th></tr><tr><td>1</td><td>000 구매</td><td>'23.6.26.</td><td>100천원</td><td>210-11(재료비)</td><td>210-01(일반수용비)</td></tr><tr><td>2</td><td>한국0000원 회비</td><td>'24.2.13.</td><td>36천원</td><td>210-01(일반수용비)</td><td>210-02(공공요금 및 제세)</td></tr><tr><td>3</td><td>한국0000원 회비</td><td>'24.2.13.</td><td>48천원</td><td>210-01(일반수용비)</td><td>210-02(공공요금 및 제세)</td></tr><tr><td>4</td><td>000 구매</td><td>'24.6.10.</td><td>194천원</td><td>210-11(재료비)</td><td>210-01(일반수용비)</td></tr><tr><td>5</td><td>000 구매</td><td>'24.13.10.</td><td>287천원</td><td>210-11(재료비)</td><td>210-01(일반수용비)</td></tr></table>	연번	건명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 과목	정당 과목	1	000 구매	'23.6.26.	100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2	한국0000원 회비	'24.2.13.	36천원	210-01(일반수용비)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3	한국0000원 회비	'24.2.13.	48천원	210-01(일반수용비)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4	000 구매	'24.6.10.	194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5	000 구매	'24.13.10.	287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연번	건명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 과목	정당 과목																																
1	000 구매	'23.6.26.	100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2	한국0000원 회비	'24.2.13.	36천원	210-01(일반수용비)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3	한국0000원 회비	'24.2.13.	48천원	210-01(일반수용비)	210-02(공공요금 및 제세)																																
4	000 구매	'24.6.10.	194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5	000 구매	'24.13.10.	287천원	210-11(재료비)	210-01(일반수용비)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예산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지침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복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출퇴근 미등록 등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9조(근무시간) ○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5조(근무시간), 제16조(근무상황카드 준비)
지적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근무시간) 및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5조(근무시간)에 따라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 탄력 근무제 및 대체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16조(근무 상황카드 준비)에 따라 출근부 또는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0000사무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유연근무 시 출근부 혹은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출·퇴근 시간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유연근무 사용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을 미등록하였다. 또한, 0000사무소 복무담당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가 신청한 “유연근무 “ 건을 “근무형태 변경 “ 건으로 착오 판단하여 복무관리 시스템(e-사람)에 오등록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유연근무 사용시 출퇴근 등록할 수 있도록 근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올바른 형태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통보))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불법무선국 처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35조(행정처분)
지적 내용	「전파법」 제90조(과태료) 1의2호에서는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다만,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35조(행정처분)*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소방·산림 등 국가위임사무용 무선국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적발부서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 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OOOO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OOOO공사법 제2조(법인격))으로 무선국 시설자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의뢰를 하여야 한다.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43호, 2024.4.17. 개정) 그러나, OOOO사무소는 2024.4.16. 적발한 OOOO공사의 미신고 무선국(1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하여야 하나, 적발부서에서 시정 명령한(OOOO사무소-1195, 2024.5.8., 전파법 위반무선국 확인 및 시정 요청) 사실이 있다. 또한, OOOO사무소는 2026.4.16. 적발한 OO복지단(국가기관)의 미신고 무선국에 대해 시정 명령하였으나, 회신 기간(2026.4.30.) 내에 회신이 없었음에도 시정촉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 처분하고, 국가기관에서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국가위임사무용 무선국이 아닌 미신고 무선국은 행정처분 의뢰 하기 바라며, 시정명령 후에는 시정명령을 올바르게 조치하였는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주의)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이동전파감시 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 미흡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지적 내용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이하 “처리세칙 “이라 한다) 제 10조(이동전파감시) 제1항에서는 “고정전파감시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 “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동감시 수행시에는 무선국의 운용감시, 전파품질 측정, 불법전파 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제4항 및 본소(전파관제과) 이동감시 활동 추진계획 알림 문서*에 따라, 이동전파감시 업무 수행 후 7일 이내에 이동감시 실적, 차량 출동 현황, 무선국 품질관리 등 이동감시 활동내역 및 측정자료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 및 본소 통합DB에 입력·업로드 하여야 한다. * 2024년도 이동감시활동 추진계획 알림(전파관제과-24, 2024.01.25.), 2025년도 이동감시활동 추진계획 알림(전파관제과-37, 2025.02.06.) 그러나, OOOO사무소는 ‘24.1.1.부터 ’ 25.12.31.까지 실시한 이동전파감시 활동(‘24년 13회, ’ 25년 8회)에서 측정한 무선국 전파품질 결과(점점무선국 정보, 점점시간 및 장소, 주파수, 대역폭, 전계강도, 편이, 편차 등)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또한,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제2항 제5호에서는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시설자의 조치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해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O사무소는 감사대상 기간('23.4.1. ~ ' 26.3.31.) 중 총 12건의 기술기준 위반 시설자(이통3사)를 적발하여 시정 문서를 통보 후, 시정 지시를 받은 시설자의 조치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한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에 따라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사후 관리를 위한 이동전파감시 수행 및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전파혼신조사 결과 사후 조치 미흡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0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운영) 부터 제24조(혼신예방활동)
지적 내용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20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운영)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전파혼신조사팀은 개요(스펙트럼 및 현장사진 등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활동내용, 조치결과 등 전파 민원서비스 활동사례를 작성 “하고, “혼신 상황 종료시 신속하게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의 활동사례를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앙전파관리소훈령 제143호(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2024.4.17. 일부 개정) 그러나, OOOO사무소는 2024.4.17. ~ 2026.3.31. 기간 중 처리한 총 21건의 전파혼신 중 19건의 활동사례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또한, 처리세칙 제23조(혼신처리) 제2항에서는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 일시적 외부충격, 운용자 조작 실수 등의 단순 기기 오작동을 제외하고, 혼신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O사무소는 2026.1.16. 접수된 주식회사 OOO 기지국 전파혼신 조사 결과, 적합성 평가를 받고 운용중인 RFID 기기에서 불요파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음에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에 따라 전파혼신 조사 후 활동사례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조치·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조사결과 통보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전기통신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기술기준 적합조사 결과 통보 소울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지적 내용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발생한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0000사무소는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 적합으로 판정된 통신국사 495건(2023년 188건, 2024년 161건, 2025년 120건, 2026년 26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향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유지보수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유지보수업무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제6조(측정장비 교정),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
지적 내용	①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 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에서는 충무계획에 따라 긴급복구 자재 관리대상을 지정해야 하며, 유지보수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O사무소는 ‘24년 ~ ’ 26년 유지보수업무 세부 추진 계획에 긴급복구 자재와 관련한 충무계획 변경사항(‘23년 백업 테이프, 스위칭허브 삭제)을 반영하지 않았고, ‘25년도에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전산시설용 8종)를 점검하지 않았다. ② 전파관리용 장비 교정업무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6조(측정장비 교정)에 따라 전파관리용으로 운용·관리하는 측정 장비는 측정의 정확성과 대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O사무소는 ’ 25년 교정주기가 도달한 전파관리용 장비의 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정 주기 1년인 일부 장비(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 FSH 18)의 교정을 누락하였다. ③ 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에 따라 유지보수 담당자는 연 1회 무선연락망(송·수신 설비) 시설의 고유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 고유성능 : 시스템 및 장비가 구축·도입된 시기와 동등하게 정상적으로 운용 가능한 성능(주파수허용편차, 출력, 안테나 정재파비, 수신감도 등) 그러나 OOOO사무소는 무선연락망의 고유성능을 점검하면서 일부 점검 항목(주파수 허용편차)을 누락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유지보수업무 지침」에 맞게 긴급복구 자재를 점검하고, 전파관리용 장비의 교정이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통보)